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SJC 건의사항

2010년 8월

서울 재팬 클럽

목 차

서 문 3

요 약 5

본 문

1. 노동·노사관계 분야(6 개 항목)11

계속 6 개 항목

2. 금융 분야(1 개 항목)23

계속 1 개 항목

3. 지적재산권 분야(19 개 항목) 24

신규 6 개 항목, 계속 13 개 항목

4. 개별 요망사항(3 개 항목)41

신규 2 개 항목, 계속 1 개 항목

5. 생활환경개선 분야(1 개 항목)47

신규 1 개 항목

합계 30 개 항목 (신규 9 개 항목, 계속 21 개 항목)

서 문

서울재판클럽(SJC)은 1998 년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저희 건의에 대해 진지하게 대응해 주시고 많은 개선조치를 강구해 주신 데 대해 SJC 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 13 회 건의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신 후 신속한 답변과 개선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조속히 회복한 한국은 그 경제 성장력과 기업의 강한 경쟁력이 일본에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수 많은 한국특집을 제작 방영하며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디플레이션과 공적 채무로 힘든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매우 부러운 상황입니다.

한편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현 정권은 올해 6 월에 신성장전략 ‘활기찬 일본의 부활 시나리오’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경제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성장센터가 된 아시아에서 환경 문제, 인프라 구축,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의 해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일본도 함께 발전하는 길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발전하는 아시아 경제에서 대규모 경제력을 토대로 그 핵심이 되는 것은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이들 3 국이 아시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큰 힘을 발휘함과 동시에 시장개방 노력을 기울여 거대한 아시아 경제권 구축에 매진해야 합니다.

한일 양국 간에는 EPA/FTA 의 조기실현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5 월 말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EPA/FTA 협상 레벨을 격상시키고 협상 가속화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측에는 막대한 대일무역적자 및 일본시장에서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으나 양국의 경제적 국경을 허물고 무역, 투자, 인적 이동의 자유를 통해 양국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결실을 아시아 전역에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SJC 는 한국의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요청 드리고 그 상황을 회원기업뿐 아니라 여러 일본 기업에게 알려 양국의 경제관계 확대를 위해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의에서는 노동 · 노사, 금융, 지적재산, 개별안건, 생활관련 등 총 30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 신규는 9 건, 계속은 21 건입니다. 참고로 세무관련 6 항목을 별도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이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의를 함에 있어 SJC 각 전문위원회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일본의 상황 등을 고려한 후 한국의 현황을 충분히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굴하여 건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법률 및 제도 개정 상황을 나름 충분히 파악했다고는 하지만 만일 건의내용이 이미 개정된 사항이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노사분야 6 항목은 모두 계속사항입니다. 이 분야는 많은 일본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좀처럼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노동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금융분야는 계속사항 1 항목입니다.

지적재산분야는 가장 많은 19 항목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터넷 상의 저작권침해대책, 일본에서 제작한 CD 판매 절차, 위조품 진위판정교육의 기회 확대 등을 다루었습니다. 이 분야의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합니다만 지적재산보호를 통한 기업활동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더욱 제도의 개정 및 확충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개별안건에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부조달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사항이므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관련에서는 교통문제 개선을 요망합니다.

올해 6 월 3 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SJC 회원을 오찬간담회에 초청해 주셔서 최경환 장관님께서 한일간 경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시사하시고 일본의 대한직접투자확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SJC 로서도 일본의 투자확대를 바라는 바이며 이를 위해서도 이번에 건의드리는 항목에 대해 진취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0 년 8 월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나가이 마사나리(長井正成)

건의사항 (요약)

노동·노사 관련 분야 (계속 6 개 항목)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 철폐 【계속 / 내용변경】

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도록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동의가 전제된다면 노사협상 시 기업측이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 94 조제 1 항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의무’의 철폐를 요망한다.

2) 유급휴가 보상 금지 【계속 / 내용변경】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사용 유급휴가의 보상의무 면제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마련되면서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본 개정은 실질적인 불이익 개정이므로 도입이 지지부진하며, 유급휴가의 실제사용과 워크라이프 밸런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건의서에 대한 귀 정부의 답신에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본 답신이 ‘근로기준법 제 61 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가 개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우선’되도록 법개정을 요망한다. 또한 법개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건과 관련된 행정 해석을 관보 등에 게재하여 주지해 주기 바란다.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계속 / 내용추가】

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법정퇴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산정기초금액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직전 3 개월 평균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법정 최저기준 퇴직금이 높기 때문에 장기고용 종업원이 많은 일본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착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퇴직급여충당금이 늘어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법정퇴직금 산정기초금액의 재검토’를 요망함과 함께 기존에 도입된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에 대해서도 그 원활한 이행 조치를 위한 법적 준비를 요망한다.

4)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연장, 차별금지 완화 및 특정파견의 법 제도화 【계속 / 내용추가】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 취업자 중 약 35%에 달하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비율이 높다. 또한 2009 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율을 보아도 시행 전에 비해 대폭적인 변화는 없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활성화 및 법적 준비는 기업, 근로자, 행정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므로, ①사용기간의 재검토, ②‘차별처우 시정’을 위한 행정부의 구체적 지침규정 마련, ③‘상용고용형 파견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요망한다.

5) 사용자의 노동조합 재정지원 금지 【계속 / 내용변경】

선진국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며, 그 목적은 노동조합의 경제적 독립성 보장과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취지로 하고 있다. 한 편, 한국에서도 올해 7 월부터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 금지규정이 시행되었는데, 시행함에 있어 과도기적 조치로 ‘타임오프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장에서 그 해석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타임오프제도’의 폐지를 요구함과 함께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타임오프 상한선을 낮춤과 동시에 실무차원의 제도운용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지시켜 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복수노조의 협상창구 단일화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6)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계속 / 내용변경】

상시 20 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일정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 고용의무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를 고용함에 있어 원하는 수준의 인재가 없는 등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제도이다. 과거의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어학능력이 있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를 알선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추천자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거나 알선 받은 인재 중에는 기업측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추천자를 더욱 확대시키거나, 또는 일정 수의 대상자 명단을 제공해줄 것을 요망한다.

금융 분야

(계속 1 개 항목)

7)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 손금처리 【계속】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가 실시하는 국내조달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따라서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해도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망한다.

지적재산권 분야

(신규 6 개 항목, 계속 13 개 항목)

8)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제도 정비 【신규】

일본 만화가 잡지에서 스캔되고 일본 TV 프로그램도 한국어 자막이 삽입된 채 불법 업로드되어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전파되고 있어 일본 기업은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고 있다. ISP를 경유한 삭제요청이 개선되는 한 편, 자체 서버에 의한 침해에 대해서는 효과적 대응수단이 적기 때문에 법제도의 정비를 요구한다. 또한 처벌도 일본에 비해 경미하여 범죄가 반복되는 경향이므로 처벌 강화를 요망한다.

9) 한국내 일본CD 판매에 관한 절차 개선 【신규】

한국에서 일본 CD 를 판매할 경우 신청서 제출 후 판매허가를 받고 출하하기까지 2~3 주가 소요되어 한국내 판매예정이 늦어지는 일이 있다. 절차의 신속화 및 간소화를 요구함과 함께 절차(특히 JARSAC 미등록의 경우)의 전 과정이 불명확하므로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의 투명성

확보 관점에서 신청 시의 필요서류, 심사기준 등의 공개를 요망한다.

10) 한국의 시청자를 위한 TV 프로그램, 극장용 영화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문제점 【계속】

여전히 일본 TV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서 배척되고 있으므로 일본 TV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여 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요망한다. 또한 TV 프로그램의 기획내용(프로그램 포맷)의 아이디어 도용방지에 대한 지도를 거듭 요망한다.

11) 특허출원 절차의 개선 【일부 계속】

한국의 특허출원 절차가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들의 절차에 비해 출원인에게 편리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 3 가지의 개선을 요망한다. ①거절이유 통지에 대한 응답의 지정기간을 3~4 개월간으로 함과 동시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을 장기화한다. ②멀티의 멀티 클레임(다수종속청구) 표현을 인정한다, ③특허결정 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분할이 가능하도록 한다.

12)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기록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대상인데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발명의 모방이 매우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 적절한 보호를 위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망한다.

13) 외국어출원 도입, PCT 출원의 보정범위 확대에 대해 【계속】

외국어 출원을 바탕으로 한국 출원을 할 경우나 외국어로 PCT 출원을 할 경우 번역에 오류가 있으면 현행제도 하에서는 본래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여 권리취득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외국어 출원의 도입을 요망한다. 또한 PCT 출원을 할 때 외국어 원문에 입각하여 절차의 보정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망한다.

14) 디자인등록 요건 및 상표등록 요건의 개선 【계속】

동일 출원인이라도 전체의장을 출원한 후에 부분의장이나 부품의장을 출원하면 거절되어 등록을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상표제도에서도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소유하던 것을 하나로 통틀어 상표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광범위하게 또는 포괄적인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면 동일 출원인일지라도 자사의 선행등록이 인용되어 거절된다.

동일 출원인에 의한 이런 경우의 출원허용을 위해, ①선출원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후출원의 부분의장 또는 부품의장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도입 및 ②출원인 자신이 소유한 선행 등록상표는 인용하지 않는 제도, 운용으로 개선할 것을 요망한다.

15) 물품과 수상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화상디자인의 보호 확충 【계속】

현행 화상디자인제도에서는 물품과 화상의 일체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와 같은 물품은 TV 에 표시되는 조작화면 등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대상물품을 TV 로 할 수밖에 없다). 물품과 수상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라도 물품의 일부로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고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화상디자인의 보호 확충을 요망한다.

16) 상표의 선후 출원에 관한 규정적용의 판단시기 【계속】

예를 들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상표등록 A 의 존재를 모르고 동일한 상표를 제 3 자가 출원

한 경우(출원B), 그 제3자에 의한 미사용취소심판을 통해 상표등록A의 취소가 확정되고 소급되어 소멸해도 출원B는 출원시점을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절된다. 따라서 상표등록A가 취소된 후에 재차 출원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담을 없앨 수 있도록 법률적용의 판단시점을 현행 '출원시점'에서 '결정시점'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망한다.

17) 특허청 웹사이트(KIPRIS)를 통한 의장 및 상표 검색에 대해 【신규】

한국 특허청 웹사이트(KIPRIS) 중에서 영문으로 제공되는 공보기재정보의 서지적 사항 등 일부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어 이용에 지장이 있으므로 영어표기를 요망한다.

18) 상표 유사성 여부 판단 관련 심사기준 운용 재검토에 대해 【신규】

현재의 상표심사에서는 선등록 'A'가 있을 경우 결합상표 'A+B', 'A+B+C' 등은 거의 모두 거절되어 거래실태나 현실적 혼동과는 동떨어진 매우 획일적인 심사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상표심사기준 21 조 5 항). 상표심사의 유사성 여부 판단 시 공존등록사례 현황, 거래실태, 현실적 혼동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심사운용의 재검토를 요망한다.

19) 해외저명상표에 관한 판단기준의 적정화에 대해 【신규】

한국은 상표의 모인출원이 많다(예: 일본 만화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한국 TV 드라마 제목 등). 일본에서 상품이나 미디어를 통한 광고 실적이 있어도 한국 특허청의 운용 상으로는 '해외저명상표'임을 인정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일본기업의 대책비용이 막대하게 든다. 관련 없는 제 3 자의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해적물품의 유통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 해외저명상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정화할 것을 요망한다.

20)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제한 철폐 【계속】

등록공고 3 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만 청구인 적격이며 누구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등록공고 3 개월 경과 이전에만 가능한데, 누구라도 기간의 제약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므로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제한의 철폐를 요망한다.

21)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 【계속】

특허권 침해소송이 지방법원 등에서 진행될 경우 피고가 대항수단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대상특허의 유효성을 특허심판원(또는 특허법원)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 특허발명이 명백하게 무효일 경우 법원은 특허무효의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러한 운용을 제도상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망한다.

22) 침해입증의 용이화 【계속】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 있어 소송제기 전에는 증거수집 처분절차가 없어 소송상대 예정자로부터 정보나 증거를 입수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따라서 기소 전에 법원관계자가 침해물품 등을 조사하여 어떠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등의 창설을 요망한다.

또한 소송심리중인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을 포함하는 문서나 정보 등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특별히 허용된 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절차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망한다.

23) 간접침해 규정의 확충 【계속】

특허권 침해에 사용된 부품이나 재료를 침해자에게 공급하는 행위 등도 침해행위가 되는데 (간접침해), 현행법에서는 그 대상을 전용부품(그 생산에만 사용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에만'의 요건이 엄격히 해석될 경우에는 구제가 어렵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강화를 위해 악의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간접침해의 성립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망한다.

24) 통관금지조치 강화에 대해 【계속】

모조품 및 해적판이 범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기업측은 그 대응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적 부담을 필요로 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항·항만검역 조치가 적용되는 범위를 디자인권, 특허권 등으로 조기확대 할 것을 요망한다.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압수되는 수입품 중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여전히 많은데, 한국에서 수출 시의 감시 강화를 요망한다.

25) 위조품 진위판정 교육 기회의 확대 【신규】

세관에서 위조품을 단속하려면 진위를 판정하는 단속직원의 식견이 중요한데,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피해기업이 강사로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되어 왔다. 올해 들어 이 세관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TIPA 회원자격이 있어야 하며 고액의 TIPA 연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통관금지조치**에서 배제되었다. 회원이 아닌 기업에게도 세관 단속직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요망한다. 또한 경찰 등 다른 부처의 지적재산권 침해 단속직원도 같은 교육기회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망한다.

26) 모조품의 규제 및 단속 강화,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제고 【계속】

올해 8월부터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데 단순히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특허청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바탕으로 충분한 단속횟수를 통한 실제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과 일본기업의 피해실태에 상응하는 상품이나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 등에 의한 단속운영계획을 명확히 하고, SJC(한국 IPG)와 연계한 단속을 요청한다.

개별 요망사항

(신규 2개 항목, 계속 1개 항목)

27) 신약 약가산정 프로세스의 개선 【계속】

의약비 억제라는 관점에서 신약의 약가를 억제하여 인하하는 방안이 다양하게 채택되고 있어 제약기업의 한국내 사업전개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신약이 국민의 질환치료에 공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합리성이 결여된 약가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약가협상 시 제약기업에 중복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을 개선해 줄 것을 요망한다.

28)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신규】

신약뿐만 아니라 시판 후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제도가 중복적용 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에 의한 리베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유도제도'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등 기업입장에서는 신약개발 투자비용과 의약품정보 수집 및 제공활동비용 회수 등 수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과거에 마련된 약가관리제도 중에는 본래의 도입취지를 상실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변질

되고 있다. 특히기간 중에는 약가인하를 유예하거나 혹은 연간 약가인하율에 상한을 설정할 것을 요망한다.

29)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부조달제도의 재시행 【신규】

한국에서는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사무기기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회사로부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금력이 풍부하여 중소기업보다 저가를 제시할 수 있는 대기업이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에 한국정부가 해왔던 것처럼 경쟁입찰 시에 중소기업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제도의 재시행을 요망한다.

생활환경개선 분야

(신규 1 개 항목)

30)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 【신규】

미정비 차량 및 오토바이 보도주행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망한다.

건의사항(본문)

1. 노동·노사 관련 분야

건 명	1.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 철폐 【계속/내용 변경】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p> <p>본 규정은 한국의 노동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을 견제할 목적으로 당시의 판례를 바탕으로 1980 년대에 동의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p> <p>그러나 ‘불이익 변경에 대한 조합의 동의의무’로 인해 과도하게 사용자측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p> <p>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은 어떠한 사정일 경우라도 불이익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밖에 없다. 한 편, 조합측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쟁의권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p> <p>2009 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한국의 판례는 일본의 판례 및 노동계약상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거의 동일하다’는 답신을 받은 바 실질적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으나, 특히 일본계 기업은 한국내 REPUTATION RISK가 경영상 큰 치명타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관련 소송을 회피하는 경향이므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일지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실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p> <p>격변하는 작금의 세계경제 정세 속에서는 기동적인 경영시책의 실행이 요구되는데 이처럼 과도한 조합에 대한 권리부여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p> <p>당측의 건의는 선진화하는 한국에서 해외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사문제를 노사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전화시키고, 안심하고 투자하고 고용 창출 환경을 구축할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선진화를 추진하는 한국정부와 공통된 과제인식에 입각한 것이다.</p>

<p>개선요망</p>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이하의 2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① <u>근로기준법 제 94 조제 1 항(규칙작성, 변경절차)에 있는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무’의 철폐를 요망한다.</u></p> <p>② <u>2009 년도 귀 정부의 답신 가운데 판례법리를 반영했다고 하는 ‘취업규칙의 해석 및 운영지침’(2009.4.24)과 관련해 귀 정부가 답신한 ‘일본의 판례 및 노동계약상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거의 동일’하다는 근거를 서울 재팬 클럽에 공개해주시기 바란다.</u></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 94 조제 1 항</p>
<p>비 고</p>	<p>일본에서도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노사간에서 교섭하는 것이 통례적이지만 반드시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동기준법 제 90 조).</p>

건 명	2. 유급휴가 보상금지 【계속 / 내용변경】
현황/문제점	<p>OECD 조사(OECD Fact Book 2010)에 따르면 한국근로자의 연간근로시간 2256 시간은 OECD 가입국의 평균 1764 시간에 비해 약 1.3 배인데, 이것은 작년에 발표된 자료와 거의 비슷한 수치로써 여전히 연간근로시간이 독보적인 상황이다.</p> <p>근로시간의 길이는 반드시 노동생산성과 비례하지 않으며 한국경제의 강점인 높은 노동품질을 유지하며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휴가사용 촉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p> <p>이 점에 관해서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 의무 면제가 규정되고, 또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된 점을 보더라도 귀 정부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p> <p>일본계 기업 역시 같은 인식 아래 유급휴가 사용촉진의 실행을 원하지만, ‘유급휴가를 사용하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보상제도가 장해요인이 되어 사용촉진이 부진한 상황이다.</p> <p>한 편, 작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사용자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강구하는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면, 법 제 61 조에 따라 실시한 휴가사용 촉진조치 대상인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다.</p> <p>그러나 이하의 3 가지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유급휴가 사용촉진이 부진한 경우가 많다.</p> <p>① 취업규칙, 단체협약 개정의 어려움</p> <p>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유급휴가의 보상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유급휴가의 보상은 수입의 일부로 기득권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경이 되어 조합과 계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급휴가 보상의 면제에 대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 그 해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사업주로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유급휴가를 보상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조합의 합의가 필수적인데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p> <p>② 금전보상 면제 근거의 취약함</p> <p>2009 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는 답신에서 ‘사용자가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은 면제된다’고 하였다. 한편, 귀 정부가 발행한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3.9~2005.3)을 보면 ‘사용자는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개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p>

	<p>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회시사례가 있는데, 본 해석은 작년 귀 정부의 답신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귀 정부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크게 변경되고 있다.</p> <p>③ <u>현장 실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용촉진제도 규정</u></p> <p>‘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르면 ‘휴가사용기간(1년) 종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각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로부터 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직접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도의 마지막 3개월간 집중적으로 종업원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특히 제조업은 생산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므로 휴가사용의 타진을 단념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기업측의 부담이 큰 제도이다.</p>
<p>개선요망</p>	<p>노동품질 유지 및 향상의 중요성이 침투되고 이를 위한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해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① <u>법제도 개정</u></p> <p>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유급휴가의 보상이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 61 조가 개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우선’되도록 법개정을 요망한다.</p> <p>② <u>불이익 변경에서 제외</u></p> <p>상기 ①의 법개정 실시가 어렵거나 또는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유급휴가 보상의 폐지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변경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가 보상을 면제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귀 정부의 정식적인 행정해석을 관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해주기 바란다.</p> <p>③ <u>사용촉진제도 간소화</u></p> <p>현행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업종에 따라서는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간이 시작할 때 연중 아무 때나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정도로 그치는 등, 업종을 불문하고 널리 휴가사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정을 간소화해주시기 바란다.</p> <p>④ <u>휴가사용촉진 홍보</u></p> <p>워크라이프 밸런스 개선을 위해 휴가사용을 촉진하려면 근로자의 의식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귀 정부로부터 ‘근로시간의 길이가 반드시 노동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품질의 유지 및 향상을</p>

	위한 워크라이프 밸런스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관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1 조, 5 조, 61 조, 94 조제 1 항
비 고	<p>일본에서는 휴가 사용을 중시하고 있으며 노동기준법에 '사용자는, ...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노동기준법 제 39 조제 1 항)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해석(1955년 11월 30일 기수 4718호)에서도 '법정일수 이내 유급휴가의 보상'은 위법으로 되어 있다.</p> <p>유급휴가의 사용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부진한 기업의 실태조사를 부탁하고자 한다. 귀 정부가 일본계 기업의 실태조사를 희망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p>

건 명	3.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정 【계속 / 내용추가】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법정퇴직금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퇴직금 산정기초금액으로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액(직전3개월 평균임금)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고용 종업원이 많은 일본계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착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늘어나 경영상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서울 재팬 클럽 회원기업들은 법정퇴직금제도의 향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퇴직금제도의 산정기초금액에 대한 재검토 또는 다른 제도로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p>또한 퇴직금제도를 대신하는 제도로써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데,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비교적 높은 젊은 세대에서는 운용수익이 임금상승률을 상회하지 않는 한 종업원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하므로 사용자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이행을 촉구해도 종업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점도 감안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개선요망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의식을 감안하여 작년에 이어 이하의 2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① 산정기초금액의 재검토</p> <p>2008년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는 답신에서 ‘법정퇴직금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로 자리매김된다’고 하였다.</p> <p>한편, 산정기초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후불임금의 성격을 넘어 가장 높은 직전수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이것은 귀 정부의 견해와 실제 운용기준에 정합성이 없으므로 귀 정부의 견해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변경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구체적으로는 ‘법정퇴직금 산정기초금액을 통산고용기간의 평균임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균임금액에 일정 인플레이션 비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p>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이행</p> <p>2009년도 건의에 대해 ‘현행 퇴직금제도에 비해 유연한 인사관리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이 가능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는 답신을 받은 바 있다.</p> <p>귀 정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이행하면 기업측의 부담은 1년마다 확정되고 또한 고령자고용을 위한 각종</p>

	<p>조치도 유연하게 대응하기 쉬워진다.</p> <p>한편, 동 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필요한데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계 기업은 여전히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견지하는 회사가 태반이다. 상기 ①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귀 정부의 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정퇴직금제도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시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세금부담 감면 등 이행촉구를 위한 시책이 도입되어 있으나 기업측 입장에서 보면 불충분하며, 이행촉진을 위한 실효성 높은 법제정이나 환경정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 34 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 조 내지 제 11 조</p>

<p>건 명</p>	<p>4. 비정규직 사용기간제한 연장, 차별금지 완화 및 특정과건 법제도화 【계속 / 내용추가】</p>
<p>현황/문제점</p>	<p>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 취업자 중 약 35%에 달하며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비율이 높는데 이 경향은 과거 몇 년 동안 증가 추세이다(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미국 4%, 일본 12.8%, 독일 12.7%에 비해 한국은 17.1%).</p> <p>또한 2009 년도에 전면실시된 ‘비정규직보호법’은 그다지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2009 년 9 월 4 일자) 정규직 전환율을 보아도 시행 전에 비해 대폭적인 변화가 없다. 정규직 전환이 부진한 배경에는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고정비용 증가를 피하려는 기업측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p> <p>상기한 바와 같이 비정규직을 둘러싼 환경은 향후 급변할 것 같지는 않으며 기업, 근로자, 행정 등 3 자 모두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활성화 및 추가적인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이하의 2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기업의 취업기회 제공과 근로자의 ‘일자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p> <p>① 사용기간</p> <p>현재 법률로 계약기간이 2 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2 년마다 근로자가 교체되면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지 못하여 기업으로서는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능력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p> <p>② 차별처우 시정조치</p> <p>차별금지를 규정한 법에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처우마련이 애매한 상황이며 법 취지에 입각하여 운용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p>
<p>개선요망</p>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하의 3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 해주기 바란다.</p> <p>① <u>비정규직의 사용기간</u></p> <p>2009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사용기간을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답신을 받았는데, 제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향후 국회에서 심의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사용기간의 연장은 기업, 근로자 상호에게 득이 되므로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현 시점의 검토상황, 특히 향후 검토일정을 공개해주기 바란다.</p> <p>② <u>차별처우의 시정</u></p>

	<p>차별처우 금지의 취지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하는 것’임은 이해되지만 ‘합리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업무내용/책임범위 등)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임금항목, 복리후생항목 등)가 애매하므로, 귀 정부가 운용 상 활용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의 판단기준 및 ‘불리한 처우’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주기 바란다.</p> <p>③ <u>상용고용형 파견사업</u></p> <p>2009년 건의에 대해 귀 정부로부터 ‘저가입찰경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이라는 답신을 받았는데 그것은 등록형 파견의 특징이다. 상용고용형 파견은 오히려 고부가가치형 비즈니스이며 또한 파견근로자는 전원 파견사업주와 정규고용 관계이므로 근로자의 지위는 안정적이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
<p>비 고</p>	<p>일본에서 상용고용형 파견의 파견 단가는 등록형 파견에 비해 42%로 높다(과거 10년 평균으로 보면 약 70% 높다).</p> <p>또한 고용규모는 작아도 33만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과거 10년 동안 약 5배로 규모가 커졌다.</p>

건 명	5. 사용자에게 의한 노동조합 재정지원 금지 【계속 / 내용변경】
현황/문제점	<p>선진국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용자측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다른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며, 노동조합의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취지로 하고 있다.</p> <p>한국에서도 1996년 노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 금지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노사환경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수차례 시행이 연기되었다가 올해 1월 노동조합법 개정을 거쳐 올해 7월부터 드디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시행에 있어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경제적 독립성이라는 법 취지 및 노사환경 구축의 양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p> <p>특히 올해 5월에 고시된 타임오프 상한은 이른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방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현행 전임자 수를 오히려 추진하는 듯한 제도이며, 또한 전임자가 없는 기업에게는 ‘제도상 타당하다고 인정된 상한 인원수까지 전임자를 두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조합측으로부터 나올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p> <p>특히 한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은 그 대부분이 100명 전후의 기업으로써 금번 공시된 타임오프 상한은 특히 일본계 기업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p> <p>또한 개정된 노조법의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하여 시행방안에 따라서는 사용자측에 물리적, 시간적 부담을 주고 또한 노사협력의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p>
선요망	<p>상기의 현황 및 문제점을 감안하여 이하의 5 가지 사항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란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u>타임오프제도를 폐지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불을 완전히 폐지 해주기 바란다.</u> ② 타임오프제도의 도입은 노조전임자 임금문제의 최종해결책이 아니라 완전금지까지의 과도기적 조치 및 급변완화조치로 인식하고 있는데 귀 정부의 견해를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③ 한국의 노사환경 현황을 감안할 때 타임오프제도의 즉각적 폐지가 어려울 경우, 적어도 현재의 타임오프 상한은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u>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므로 이것을 낮추어 주기 바란다.</u> ④ 과도기적 조치일지라도 노조전임자의 임금지불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마련하였다면 금년 6월에 발행된 ‘근로시간면제한도적용매뉴

	<p>얼'에 따라 <u>각 기업에서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실무차원의 지침을 조속히 정비한 후 주지해주시기 바란다.</u> 또한 실행 후에는 귀 정부의 철저한 지도 및 관리를 부탁하고자 한다.</p> <p>⑤ <u>복수노조에 대해서는 협상창구 단일화에 대해 조속히 귀 정부의 구체적 지침을 정비한 후 기업에게 제시해주시기 바란다.</u></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고용노동부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제 4 항, 제 5 조, 제 24 조제 2 항 동법 부칙 제 5310 호 제 5 조 제 1 항 및 제 3 조, 제 6 조 제 1 항</p>
<p>비 고</p>	<p>일본의 법령도 '단체운동을 위한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경리상 원조를 받는 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노동조합법 제 2 조 제 2 호), 각 기업은 당연히 해당법령을 준수하고 있다.</p>

<p>건 명</p>	<p>6.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의 탄력적 운용 【계속 / 내용변경】</p>
<p>현황/문제점</p>	<p>국가유공자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 조에 의해 상시 20 인 이상을 고용하는 일반사업장(제조업 사업장은 상시 200 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은 국가유공자를 근로자 수의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리고 본 법률에 대해 2003 년부터 2007 년까지 5 회, 그리고 2009 년을 포함하여 총 6 회에 걸쳐 외국기업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에 대해 2007년 건의에 대한 답신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알선할 경우에는 가급적 해당기업에 필요한 어학능력이 있는 자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유공자를 알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009 년 답신에서는 “‘고용명령’이란 용어를 ‘보훈특별고용’으로 명칭을 바꾸고 취업지원 대상자를 5 배수로 추천하여 기업 등이 선택한 자를 고용하도록 하여 인재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답신을 받았다.</p> <p>그러나 실제로는 추천 받은 대상자 중에서 채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거주자였기 때문에 결국 채용하지 못하는 등 추천자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추천자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도 변화가 없다. 때문에 일본계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국가유공자의 고용의무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다.</p>
<p>개선요망</p>	<p>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유공자 추천과 관련하여, <u>외국인투자기업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후보자 선정을 실행성 있는 방법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u> 출퇴근 가능 여부 등 최소한의 조건은 물론 어학능력이나 일정한 전문성 등을 충족시키는 후보자를 추천 받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선정자 측에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원활한 고용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p> <p>또한, 만일 선정단계의 압축이 어려울 경우에는 <u>외국인투자기업측이 보다 많은 대상자 가운데 채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천자 수의 추가적인 확대나 혹은 일정 인원수의 대상자명단을 제공해주시기 바란다.</u></p> <p>외국인투자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기업도 각 기업마다 요구하는 인재 요건이 다르므로 많은 대상자를 기업측이 확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스매칭이 적은 고용을 많이 창출할 수 있다.</p> <p>이러한 제안은 유공자와 기업 모두에게 바람직한 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운용상의 방안이므로 특별히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부디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국가보훈처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 장 취업보호(제 28 조 내지 39 조)</p>

2. 금융 분야

<p>건 명</p>	<p>7. 국외지배주주 지불보증에 의한 국내차입 지급이자의 손금처리 【계속】</p>
<p>현황/문제점</p>	<p>내국법인의 차입금 가운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 및 동 주주의 지불보증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등으로 간주되어 손금산입을 할 수가 없다.</p> <p>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이라면 지급이자 및 할인료 지불이 국외에 대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단순히 지불보증만을 취득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실제 자금흐름은 국내에서 완결되므로 다른 국내자본의 동업종 타사의 국내조달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써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p>
<p>개선요망</p>	<p>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이 있더라도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u>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 6 배)를 초과하여도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한다.</u></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기획재정부 조세실 국제조세제도과 및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p> <p><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 장제 14 조</p>
<p>비 고</p>	<p><일본 사례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동 주주 출자지분의 3 배(금융업은 6 배)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외지배주주의 지불보증으로 일본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39 조 13)</p>

3. 지적재산권 분야

<p>건 명</p>	<p>8.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제도 정비 【신규】</p>
<p>현황/문제점</p>	<p>일본 출판사의 만화가 잡지에서 스캔되어 인터넷에 업로드됨으로써 지속적으로 대중에게 전파되고 있다.</p> <p>CHUING 이라는 사이트는 일본 출판사의 잡지에서 스캔한 만화화면을 번역하여 매주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해서 수십만 접속을 얻어 내고 있다. 자체서버로 전개하기 때문에 정규기업인 ISP 와 달리 일말의 준법정신도 없으며 동사의 한국라이선스권자의 항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 또한 주간잡지에서 스캔한 것이라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대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이트로 인해 현지 라이선스권자, 당사, 저작권자는 저작권이 침해되고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입고 있다.</p> <p>마찬가지로 일본의 TV 프로그램도 자막이 삽입된 채 인터넷에 불법 업로드가 횡행하고 있다.</p>
<p>개선요망</p>	<p>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제도 정비</p> <p>ISP 를 경유한 삭제요청이 개선되는 한편, 자체서버를 통한 침해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수단이 적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데, 해외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 인터넷 상의 저작물 침해는 국경을 초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건은 증가일로에 있다. 해외 권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한국내 인터넷을 통한 침해에 대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계약 및 법령준수에 대한 계몽활동을 요망한다.</p> <p>또한 인터넷 상의 저작권 침해는 피해가 잠재적이고 수치화되기 어려운데, 그 때문인지 벌칙도 일본에 비해 법정이나 실무적으로 경미하다고 들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침해자를 방치하는 꼴이 되어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p>
<p>관련기관/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령> 저작권법</p>
<p>비 고</p>	<p>일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엔 이하의 벌금, 또는 둘 다 병과(併科)된다. 또한 일본에서 유사한 사건(‘464.jp 사건’) 가운데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2000 만엔(판결에 따른 본래 배상액은 1 억 8000 만엔이었다는 부언이 있었음)이 확정된 바 있다. 그 이후로 자체서버를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은 전무하다(만화 침해사이트는 보다 교묘해지며 증가하고 있다).</p>

건 명	9. 한국내 일본 CD 판매에 관한 절차 개선 【신규】
현황/문제점	<p>한국내 일본CD 발매와 관련하여,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청을 하면 KOMCA 가 JASRAC(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조회를 한 후 발매 허가가 나오고 CD 에 부착하는 스티커를 받으면 출하를 할 수 있다.</p> <p>이 과정에 2~3 주간이 소요되어 한국내 발매예정이 늦어지는 일 있다.</p>
개선요망	<p><u>절차를 보다 신속화, 간소화</u></p> <p>상기 절차의 신속화, 간소화를 요구한다.</p> <p>또한 JARSAC 에 등록되지 않은 음원 등의 대응은 어떻게 되는지 절차의 전 과정이 불분명하므로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신청 시의 필요서류, 심사기준 등의 공개를 요망한다.</p>
관련기관/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p> <p><관련법령> 저작권법</p>

건 명	10. 한국의 시청자를 위한 TV 프로그램, 극장용 영화 라이선스 비즈니스의 문제점 【계속】
현황/문제점	<p>여전히 일본 TV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서 배척되고 있다.</p> <p>한국의 소프트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을 석권할 실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한국도 평등하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p> <p>더욱이 TV 프로그램의 기획내용(프로그램 포맷)의 모방도 횡행하고 있다.</p>
개선요망	<p>(1) 일본 프로그램의 규제를 조속히 완화하기 위하여 한일 정부기관에서 시장개방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것을 요망한다.</p> <p>(2) TV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포맷 모방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지도가 있기를 요망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센터</p> <p><관련법령> 저작권법</p>

건 명	11. 특허출원 절차의 개선 【일부 계속】
현황/문제점	<p>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기간은 통상 2 개월이다. 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 기간은 30 일간(기간연장이 인정된 경우는 추가 30 일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문헌을 인용한 사례인 경우 등 인용례의 번역이 필요한 외국출원인에게는 이 지정기간 내의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정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할 때마다 연장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연장료 및 고액의 대리인 수수료가 필요하다.</p> <p>다중 인용한 다른 종속항 등을 다중 인용하여 종속항을 기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발명의 다면적 보호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종속형식도 인정되어야 한다.</p> <p>실효성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출원인은 심사가 종료되고 특허결정을 받을 때까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허청구의 범위에서 다면적 및 망라적으로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심사관에 의한 최종 판단(결정)이나 이에 부수되는 선행기술 조사결과가 제시되기 이전 단계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광범위하게 권리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출원인 스스로가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을 인정하는 법개정이 2009년 1월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p> <p>출원인이 결정 이전에 상기의 권리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출원이 특허 결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특허결정시의 특허청구 범위가 충분히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허 청구의 범위가 불충분한 채로 특허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현행 제도에서는 출원을 분할하여 더욱 명확한 특허 청구 범위에서의 권리화를 지향하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다면적 및 망라적 권리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다.</p>
개선요망	<p><u>(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 지정 기간을 3~4 개월로 하고, 나아가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심판청구, 재심사청구) 기간을 장기화한다.</u></p> <p>한국특허청이 답변 기간을 장기화하게 되면 도입 검토중인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으나, 동일한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기간은 원칙적으로</p>

	<p>3 개월이다.</p> <p>또한, 지정 기간 장기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중에 거절 이유 통지에 답변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연장료를 지불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출원인은 1 개월마다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한다.</p> <p>이와 같은 제도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 통지의 송달로부터 예를 들어 6 개월 이내에 답변 또는 현실적으로 연장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출원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보낸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답변 의사가 없는 출원이 대량으로 축적될 염려는 없을 것이다.</p> <p>(1) <u>멀티의 멀티 클레임(다수종속청구) 표현을 인정한다.</u> 한국특허청은 다중 인용한 다른 종속항의 다중 인용을 인정할 경우 권리 범위의 이해가 어려워짐과 동시에 청구항의 개수에 따라 계산되는 각종 비용의 계산이 번잡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나, 같은 클레임 표현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 및 유럽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첨언한다.</p> <p>(2) <u>특허 결정 후 일정 기간 동안에도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u> 거절 결정 후의 분할 출원을 인정한 2009 년 1 월 법개정을 진일보시켜 특허 결정 후의 일정 기간 동안에도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한다.</p>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특허법 (2) 특허법 시행령 제 5 조 제 6 항</p>
<p>비 고</p>	<p>(1) 일본방식 심사 편람 04.10 (재외자인 경우 3 개월, 신청 시 3 개월 연장 가능), 미국 3 개월, EPC 4 개월, 중국 4 개월, 대만 3 개월 (2) 일본 및 유럽특허협력조약에서는 이와 같은 종속 형식의 클레임 표현을 인정하고 있다. (3) 일본에서는 같은 제도 개정을 2007 년에 실시한 바 있으며, 이 제도 개정은 많은 출원인에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본특허법 44 조 1 항)</p>

건 명	12. 특허법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 【계속】
현황/문제점	<p>컴퓨터관련 발명 심사 기준 2.2.1 에 의하면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p> <p>그러나, 기억 매체에 기억된 컴퓨터 프로그램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p> <p>(1)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해야지만 실행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컴퓨터에 설치했을 때, 혹은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비로서 특허권이 실시된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매개로 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기억 매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억시키지 않기 때문에 침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직접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p> <p>(2) 한편, 각 사용자에게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 특허권 침해는 생산 및 경영을 목적으로 행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용자는 침해자가 되지 않는다.</p>
개선요망	<p><u>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법의 보호대상으로 한다.</u></p> <p>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발명의 모방이 매우 쉽다는 점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실제 시장에 유통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망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의 읽고 쓸 수 있는 기록 매체’와 함께 ‘프로그램 자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특허법, 심사 기준 등에 규정되어 있다.</p> <p>또, 대만에서도 2008 년 5 월 심사 기준 개정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영국에서도 2008 년 2 월부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다.</p>

건 명	13. 외국어출원 도입, PCT 출원의 보정범위 확대에 대해 【계속】
현황/문제점	<p>한국 특허청에 대한 출원은 한국어로 출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출원 후 보완수정에 의해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PCT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에도 한국 국내의 절차에 있어서 번역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국제 출원의 원문(외국어) 기재에 기초하여 보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p> <p>그러나, 외국에서의 출원(외국어)에 근거하여 한국 출원을 하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있을 때에는 외국어로 된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오역을 정정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PCT 출원의 경우도 외국어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할 수 없고 원문의 의도를 번역문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문제를 동반하며, 발명의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p>
개선요망	<p><u>외국어에 의한 특허 출원을 인정하고, PCT 국제 특허 출원에 관하여 출원의 원문(외국어)에 기초하여 보정을 가능하게 한다.</u></p> <p>일본 등에서 도입된 외국어 서면 출원을 한국에서도 도입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외국어 출원의 수용이 어려운 경우는 초기에는 영어 등의 일부 외국어로 한정하여 순차적으로 다른 외국어를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 한국에서도 PCT 에 의한 국제 특허 출원에 관하여 절차 보정을 국제 특허 출원의 원문에 기초하여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p> <p>또한 이들 개정에 대해서는 PLT 조약 및 SPLT 조약에 맞춘 특허법 개정 시에 고려하겠다는 견해를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으나, PLT 조약 및 SPLT 조약 발효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기에 검토해 주기 바란다.</p> <p>또, 외국어 서면 출원을 도입한 경우의 심사관의 부하 증가를 한국 특허청이 우려하고 있다고 들었으나, 이 점에 대해서는 PCT 에 의한 국제 출원이 한국의 국내 단계로 이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어 출원된 출원의 심사에 대해서도 출원인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어 번역문을 기초로 하여 실시함으로써 크게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특허법</p>
비 고	<p>일본에서는 PCT국제 특허 출원의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이 한국어로 국제 출원하여 일본에서 국내 이행한 특허 출원은 한국어 원문으로 돌아가 보정할 수 있다. 같은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채택되고 있다.</p> <p>일본 특허법 36 조 2, 184 조 12 제 2 항 미국 37CFR 1.52(d), 대만특허법 25 조, 태국특허법에 기초하여 성령 제 21 호 12 조 2 항, 인도네시아 특허법 30 조 2 항</p>

건 명	14. 디자인 등록 요건 및 상표 등록 요건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디자인> 한국에서는 동일 출원인이라도 전체 디자인을 출원한 후에 부분 디자인, 부품의 디자인을 출원하면 소위 확대된 선원에 의하여 거절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 보호법 제5조3항) 따라서 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제품 전체, 각 부품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디자인이 결정되는 개발 실태에 맞추어 적시에 출원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최근 모방품 피해에 대한 증가를 배경으로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 디자인의 독자성이 높은 부분만 모방하는 모방에 대항하기 위한 부분디자인 혹은 부품디자인의 의장권 취득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7년 시행된 개정법에 의하여 동일 출원인에 의한 후출원의 부분디자인, 부품의 디자인에 대해서 소위 확대된 선원에 의하여 거절되는 일이 없이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의장법 제3조의2), 이에 따라 일본에서 전체 디자인→부분 디자인(혹은 부품 디자인)의 순으로 출원하여 각각 우선권을 주장하고 한국에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에 의해 한국에서의 출원일도 전체 디자인→부분디자인(혹은 부품 디자인)의 순서가 되어 버리므로 후출원의 부분 디자인(혹은 부품 디자인)이 거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p> <p><상표> 상품·역무 구분에서 국제 분류 재검토 등에 의하여 새로이 권리화가 가능한 지정상품이 추가되는 경우나, 기존에 개별적으로 상표 등록을 소유하고 있던 것을 일괄적으로 상표 등록하고자 할 때, 새로이 폭넓게 또는 포괄적인 지정 상품으로 출원하면 자사의 선행등록을 인용 당해 거절되고 만다.</p> <p>작년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복된 상품만 삭제·보정을 허용」이라는 회신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대응으로는 결국 기업으로서 2건의 등록상표를 관리해야 하므로 매우 불편하다. 또, 「선등록상표를 포기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으나, 제3자의 상표출원이 존재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p>
개선요망	<p>디자인보호법 제5조3항에 의한 디자인 등록 요건에 예외 규정을 마련 부분 디자인과 부품 디자인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고 우선권 주장에 따른 부분 디자인 출원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동일 출원인에 의한 출원인 경우, 선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의 부분 디자인 혹은 부품 디자인에 대해 보호 대상으로 하도록, 디자인보호법 제5조3항에 의한 디자인 등록 요건에 예외 규정(거절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창설하는 것을 희망한다.</p> <p>상표 등록 요건의 개선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 스스로가 소유하는 선행 등록은 인용하지 않는 제도 내지는 운용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 상표법</p>
비 고	일본의장법 제3조2

건 명	15. 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화상디자인의 보호 확충 【계속】
현황/문제점	<p>한국의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에 따른 화상디자인제도의 운용 상황 하에서는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화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로 공업상 이용 가능한 의장으로 취급한다」로서 물품과 화상과의 일체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DVD 플레이어와 같은 물품이며 TV 또는 모니터 등에 조작내용이 구현화된 화상디자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물품을 TV 또는 모니터 등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되며, 현재로는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물품을 비교적 포괄적인 형태로 특정해서 출원할 수 밖에 없다.</p> <p>현재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등장한 화상디자인은 해당 물품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사용목적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도 디자인보호법 상 보호되지 않으며, 화상디자인을 해당 물품의 일부로서 창작하고 그 창작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의한 제품개발 실정에 합치하지 않는다.</p>
개선요망	<p><u>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화상디자인의 보호 확충</u> 화상디자인의 출원에 대해, 물품과 수상기가 분리되어 있어도 해당 물품의 일부로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여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화상디자인의 보호 확충을 희망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디자인보호법</p>
비 고	<p>일본의장법 제 2 조 제 2 항 일본에서는 2007년에 시행한 개정법 이후,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 경우, 그에 필요한 조작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해, 물품의 부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호하는 것으로 한다. 」와 같이 화상디자인의 보호대상이 확대되어, 화상디자인을 인스톨한 DVD 플레이어와 같은 제품도 물품으로서 화상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다.</p> <p>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일본에서는 DVD 플레이어 자체가 침해물품이 되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침해대상이 되므로, DVD 플레이어 제조사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p>

건 명	16. 상표의 선후출원에 관한 규정 적용의 판단 시기에 대해 【계속】
현황/문제점	<p>상표 등록 A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지정 상품에 대하여 타인이 출원 B를 출원한 경우, A가 불사용이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이 인정되어 B의 결정시에 A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B에 대하여 A를 인용한 거절 이유는 해소되지 않고 B는 거절되고 만다.</p> <p>따라서 상기 예에서 제시한 B의 출원인이 그 상표에 대하여 상표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상표법 8조 5항 규정에 따라, 인용된 A의 취소가 확정된 후에 다시 출원해야 한다. 또, 한국을 지정한 국제등록 출원인 경우에는 새로운 국내 출원을 해야 한다.</p> <p>본건에 관련하여 금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사건번호 2006헌바113,114)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p>
개선요망	<p><u>결정시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에 관한 판단을 실시한다.</u></p> <p>조기권리화(등록)의 관점에서, 또한 중복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도 결정시를 기준으로 선후출원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조기 법개정을 요청한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방식심사 등에서의 부담 경감도 기대되며, 게다가 권리의 발생은 설정 등록으로부터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 상표의 중복 등록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출원인으로서도 재출원비용이 절감되는 부차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p> <p>선등록 상표라는 유사 여부의 판단 시점을 후출원 결정 시라고 했을 경우, 선등록상표의 불사용취소 심판의 심리 완급이나 심리 보류로 인해 후출원 심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 재출원을 하는 경우라도 불사용취소판결 확정까지 재출원을 기다려야 하며, 실질적인 후출원의 심사 기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출원시의 기준 하에서 이루어진 재출원은 어디까지나 신규 출원으로서 출원일이 설정되고, 그 결과 과거 자신의 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된 제 3자의 유사상표 출원이 새로운 자신의 선출원이 되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출원인에게 있어 중대한 문제이다.</p> <p>또, 출원 시에 널리 알려진 상표가 후출원 등록 전에 주지성을 잃어버릴 경우, 법인의 해산 등을 통해 후출원 출원 시에 존재했던 타인의 동일이름·명칭이 등록 시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단 시기가 ‘출원시’라면 후출원의 등록을 거부해야만 한다. 이는 불필요한 이유로부터 사권을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결정 시’라면 공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상표법</p>
비 고	<p>일본을 비롯해 구미 기타 많은 나라에서 상표등록 출원의 판단시기는 ‘결정 시’이다(일본상표법 제4조3항)</p>

건 명	17. 특허청웹사이트(KIPRIS)를 통한 의장 및 상표검색에 대해 【신규】
현황/문제점	한국특허청 웹사이트(KIPRIS)를 통한 의장 및 상표 검색으로 의장 및 상표공보 열람이 가능한 것은 편리하고 매우 이용하기 쉬우나, 영문으로 제공되는 공보기재정보의 서지적 사항 일부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
개선요망	KIPRIS의 의장 및 상표검색에서, 한글 문자표기의 영문 표기화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서지 사항을 영문 표기함으로써 더욱 편리성이 제고되므로 이 점을 요망한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건 명	18.상표 유사성 여부 판단 관련 심사기준 운용 재검토에 대해 【신규】
현황/문제점	현재 한국 심사에서는 상표심사기준 21 조 5 항에 따라 선등록 「A」가 있을 경우, 결합상표 「A+B (B+A) 」, 「A+C(C+A)」 등, 거의 모두 거절되고 있다. 예를 들면 ‘Dynamic Collaboration’이라는 상표 출원이 ‘Dynamics’의 상표 등록에서, ‘STREAMPRO’가 ‘PRO’에서 거절되는 등 여러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다. 특히 결합된 문자의 식별력이 약한 경우에는 그 경향이 현저한 것 같다. 또, 최근에는 「D+E」뿐만 아니라 「F+G+E」까지도 선등록된 「E」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운용은 대단히 획일적인 운용이며, 거래의 실태나 현실적인 혼동과는 동떨어진 곳에서 심사가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와 같은 운용으로는 필요 이상으로 상표권을 보호하게 되며, 새로운 상표채택의 여지를 좁히는 결과에 이르고 있다.
개선요망	유사성 여부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 운용의 재검토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상표에 대해서도 좀 더 공존등록에 상황, 거래 실태, 현실적 혼동을 고려한 심사 검토를 하는 등, 유사성 여부 판단에 관한 심사기준 운용의 재고를 요망한다. 이와 같은 심사 사례는 여러 기업에서 몇 차례 경험하고 있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건 명	19. 해외저명상표에 관한 판단기준의 적정화에 대해 【신규】
현황/문제점	<p>한국에서는 상표의 모인출원이 많다. 일본에서 상품화나 미디어를 통한 홍보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도 한국 특허청의 현재의 운용으로는 「해외저명상표」 라는 점이 여간해서 인정되지 않으며 그 결과 일본 기업의 대책비용이 막대해 진다. 관계없는 제 3 자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한국정부가 해적품 유행을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p> <p>일례로써 일본의 출판사의 만화작품을 원작으로 한 한국 TV 드라마의 타이틀(원작의 한국어직역)상표가 다수 모인출원되고 있다. 해당 모인출원에 대해서는 공고시마다 이의신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p> <p>선원주의는 이해하나, 원래 TV 방영 발표 시에는 상품화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내에서 모든 지정 상품을 커버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15 년 전부터 미디어 · 상품화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 있어도 「해외저명상표」 라는 점이 좀처럼 인정되지 않아 대책비용이 막대하다.</p>
개선요망	<p><u>해외저명상표에 관한 판단기준의 적정화</u></p> <p>특허청의 이의신청심판에 있어서 해외저명상표에 대해서는 그 증명을 간략하게 해주기 바란다.</p> <p>예를 들면 히트한 만화, 드라마의 타이틀을 상표로써 상품 전개하는 것은 현재의 머천다이징의 상식이며, 한편 해외 저명 콘텐츠의 타이틀은 무임승차의 희생양이다.</p> <p>자국에서 전개하는 것에 비해 아무래도 출원의 선수를 빼앗기기 쉬운 해외 저명 콘텐츠에 대해서, 제목이라는 점을 이유로 콘텐츠와 무관한 제 3 자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것은 해적품 유행을 장려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해외저명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배려를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상표법제 7 조 제 11 항 제 12 호</p>
비 고	<p>일본에서 해외저명상표, 혹은 해외저명콘텐츠의 상표 광고는 본 적이 없다. 심판례를 축적함으로써 과거에 무임승차를 의도했던 모인상표를 배제해온 결과라고 사료된다.</p> <p>한편, 중국에서는 현재도 다수의 모인상표가 계속해서 출원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p>

건 명	20.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제한 철폐 【계속】
현황/문제점	<p>현재의 무효심판제도에서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후에는 이해관계자와 심사관에게만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등록 공고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특허법 133 조 1 항)</p> <p>그러나, 신규성 결여 및 진보성 결여 등의 공익적 이유에 관하여는 언제까지라도 누구든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적 관점에서 필요하다.</p>
개선요망	<p><u>시기적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u></p> <p>본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 운용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을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들었다.</p> <p>따라서 특허법을 그 운용에 맞추어 개정해도 무효심판의 청구 건수가 급증하여 특허권 지위가 불안정해지리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심판이나 심결 취소 소송에서 청구인 적격이 쟁점이 될 소지가 없어지므로 법 개정에 의한 분쟁의 조기 해결도 기대된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특허법</p>
비 고	<p>일본, 미국, 영국 등 각국에서도 특허 등록 후에 제 3 자가 특허의 무효를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 청구인의 적격을 이해관계자로 한정짓지 않고 있다. (일본 특허법 123 조)</p>

건 명	21. 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해결 【계속】
현황/문제점	<p>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피고가 대항수단으로서 무효 심판을 제기하고 대상 특허의 유효성(신규성·진보성 등)을 별도로 특허심판원, 더 나아가 특허법원에서 분쟁하는 경우가 많다.</p> <p>현 시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대상 특허발명이 명확히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은 법원이 특허무효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운용은 제도 이용자로서는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환영할만한 것이나, 제도상 이와 같은 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p>
개선요망	<p><u>특허권 등의 유효·무효를 법원에서 판단하여 분쟁을 조기 해결하는 제도의 도입</u></p> <p>특허 등에 관한 소송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영국 등과 같이 특허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에 의하여 특허무효(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것)의 항변을 인정하고, 법원이 특허의 유효/무효와 침해의 유무를 동시에 판단해 주기 바란다.</p> <p>현시점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대상 특허발명이 명확히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 등은 법원이 특허무효 항변 및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이를 일보 전진시켜, 예를 들어 특허법 중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해당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이 침해소송에서 대상권리의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희망한다.</p> <p>작년도 건의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신에 의하면 산업재산권의 무효 여부는 전문지식을 갖춘 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분쟁해결 방법이라는 이유에서, 본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특허심판원에 의한 심판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심결 확정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또 특허법 164 조 2 항에 의하여 그 동안의 소송절차가 중단되면 침해사건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허법 등이 목적으로 하는 산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특허청</p> <p><관련법령> 특허법</p>
비 고	일본 특허법 104 조의 3

건 명	22. 침해입증의 용이화 【계속】
현황/문제점	<p>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소송 제기 이전에는 증거 수집의 처분 절차가 없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소송 처음부터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송 제기 전에 소송 상대 예정자로부터 정보나 증거를 입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p> <p>또, 소송 상대의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조 방법’이나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등, 소송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포함된 영업 비밀의 보호가 문제 시되는 경우도 많다.</p>
개선요망	<p style="text-align: center;"><u>기소 전 및 소송 심리 중의 증거 수집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u></p> <p>(1) <u>기소 이전의 수집 방법에 대하여</u> 기소 이전의 증거 보존 이외에, 예를 들면 법원이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원 관계자가 ‘가’ 호 등을 조사하여 ‘가’ 호가 특정되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정보(예를 들면, 특허 클레임에 해석 없이 문언 상 포함될 수 있는 ‘가’ 호가 존재하는 등)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신설해 주기 바란다.</p> <p>이와 같은 제도는 일본에서는 민사소송법 132 조의 4 에 ‘소송 제기 이전의 증거 수집의 처분’으로 규정되어 있다.</p> <p>(2) <u>소송 심리중의 증거 수집에 대하여</u> 침해 입증, 손해액 입증을 위해 상대방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서(영업비밀을 포함)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법원이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바란다. 단 문서가 영업비밀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히 허락된 자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영업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절차 제도를 정비해주기 바란다.</p> <p>한국의 지적재산 관련 재판에서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면 법원만이 그 증거를 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들었기에 이러한 운용을 극비절차로서 법률로 명시해 주었으면 한다.</p> <p>또, 이 소송 심리 중의 증거 수집에 관한 요망에 대해서는 2007년에 한국 국회에 제출된 특허법 개정법안 132 조, 224 조의 3~5 가 성립됨으로써 대부분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개정이 조기에 실시되기를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특허법
비 고	일본 특허법 105 조, 일본 민사소송법 132 조의 4

건 명	23. 간접 침해 규정의 확충 【계속】
현황/문제점	현행법에서는 특허권 침해에 사용되는 부품과 재료를 침해자에게 공급하는 예비적 행위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으나, 대상을 전용부품(그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렇기에, 「~에만」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간접침해 규정에 의한 구제가 어렵다.
개선요망	<u>간접 침해 성립 범위의 확충</u>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 강화 관점에서 악의로(특허발명인 것 및 침해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부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간접 침해의 성립 범위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관련법령> 특허법
비 고	일본국 특허법 101 조 독일 특허법 10 조 미국 특허법 271 조(c)

건 명	24. 통관금지조치 강화에 대해 【계속】
현황/문제점	일본의 관세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회로배치이용권, 및 육성자권 등의 주요한 지적재산권을 모두 열거하고, 이들 권리 침해에 대해서 통관금지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 관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표와 저작권만을 통관금지조치의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허권 등에 대한 적용범위의 확대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서서히 진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의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지 말고 적절한 보호를 위해 조기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 또, 일본세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품으로써 압수되는 수입품 가운데 한국에서 온 것이 아직도 많다.
개선요망	<u>통관금지조치가 적용되는 범위의 확대</u>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단속은 권리범위, 침해 인정의 여부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오늘날 한국기업의 경제활동의 국제화나 제품 품질 및 기술 · 디자인 등의 경쟁력 향상에 비추어보아 한국 국내로 유입 · 유통되는 모조품 · 해적품의 단속강화의 일환으로써 특허권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통관금지조치가 가능한 제도를 조기 실현해 주기 바란다.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수출규제 한국에서 수출할 때 지적재산 침해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을 희망한다.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관세청 <관련법령> 관세법
비 고	한국관세법 235 조 일본관세법 69 조 11 제 9 항

건 명	25. 위조품 진위판정 교육 기회의 확대 【신규】
현황/문제점	<p>세관에서 위조품을 단속할 때 단속직원의 진위 판정에 관한 식견이 중요하며 현재도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조품 진위 판정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p> <p>이 위조품 진위 판정 교육에 기업의 담당자가 강사로써 참가해 왔으나, 최근 TIPA(무역관련 지적재산권보호협회)가 창구가 됨으로써 이 세관 교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TIPA 회원비(1,000 만원)를 지불하고 회원 자격을 얻어야만 교육 기회가 부여되는 상황이다.</p> <p>그 결과, 회원 등록이 어려운 영세 기업(한국기업 · 일본계기업)은 단속직원에게 진위 판정 교육을 제공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고, 이러한 기업은 세관에서 통관금지대책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현실이다.</p>
개선요망	<p><u>영세기업 대상의 세관 교육 기회 확대</u></p> <p>대기업, 중소 · 영세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영세한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TIPA 회원으로 한정된 세관직원 연수로는 불충분하며, 한국정부로써 회원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세관단속직원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또, 일본계기업들도 이를 많이 희망하고 있다. 다수의 일본계기업이 참가함으로써 혼란이 예상된다면 일본계기업의 교육참가에 관해서는 일본측에서 기업 선정(순서를 정해서)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교육 실시에 장애가 없도록 협력하고자 한다.</p> <p><u>경찰 등의 단속직원에 대한 연수 기회의 부여</u></p> <p>현시점에서는 진위 판정 방법 교육은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연수에 경찰 등 다른 단속직원도 참가하도록 요망한다. 정무기관별로 교육 기회가 개최되는 것도 예상되나, 일본기업인 경우에는 일본 본사로부터 지재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강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연수 기회도 조직별(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개최해 주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관세청 <관련법령> 관세법,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건 명	26. 모조품의 규제 및 단속 강화,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제고 【계속】
현황/문제점	<p>현 시점에서 특허청에 의한 위조상품·판매 등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 및 시정 권고에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있는 수단인 차압, 구속 등의 권한 행사는 어려우며, 검찰·경찰의 협력을 얻어 실시되는 경우 적시에 단속이 어렵다. 또, 상표권 침해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같은 보편적인 단속이 아니라, 위조품의 식별, 유사 판단, 침해 내용의 파악 등 전문성이 필요하다.</p> <p>따라서, 금년 8월부터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나, 단순히 권한 부여에 그친다면 위와 같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p>
개선요망	<p><u>모조품의 규제·단속 강화</u></p> <p>특허청 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에 기초한 실제적인 단속이 여러 번에 걸쳐 충분히 정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 단속의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피해 실태에 대응한 상품이나 지역에서 실시되기를 바란다.</p> <p>특허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단속에 대해서도 그 단속운용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기업의 피해 해소를 위한 일본기업의 단속활용방안이 불분명하다. 예를 들면 SJC(한국 IPG)에서 일본계 기업의 단속요청리스트(대책을 요청하는 상품·권리나 불법업자의 블랙리스트)를 제공할 것이므로 시장 단속이나 지방에서의 단속에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p>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관련기관> 특허청

5. 개별요망사항

건 명	27. 신약 약가 산정 프로세스의 개선 【계속】
현황/문제점	<p><현황> 한국에서는 의료비 억제 관점에서 신약 약가를 억제해 인하하는 방안이 신약승인부터 판매 후에 이르기까지 다수 채택되어 있다. 그 결과, 약가라는 신약 가치는 현저하게 훼손되고, 제약기업들의 한국에서의 사업 전개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 또, 한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유용성과 안정성이 증명된 신약이라도 상응하는 약가가 설정되지 않으므로 시판이 연기되고 신약이 국민의 질환 치료에 공헌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p> <p>아시아에서는 이미 선진 수준에 도달해 있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국제공동임상에 있어서도 한국의 성적은 다른 나라에서의 신약 시장 출시를 위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스스로 개발임상에 참가한 신약의 가치가 자국민의 구명·치료실적 향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불가사의한 상황도 엿보인다.</p> <p>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은 2006 년 이후 적자 상태이며 재정 사정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저약가산정이라는 단기적인 경제성에만 눈을 돌리는 것은 신약개발·투입이라는 신약 업체의 기본적인 사업 의욕을 현저히 떨어뜨려 신약에 의한 의료 효율 향상을 방해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재정을 더 한층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p> <p>이러한 현황은 2005 년 3 월에 출범한 대통령자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정한 ‘의약품 산업 발전 방침’에서 목표한 ‘2015 년까지 세계 7 위 의약품 시장국가가 된다’는 내용이나 ‘의약산업의 글로벌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이다.</p> <p><문제점> <u>(1) 약가산정협상 이원화에 의한 저약가산정과 협상 장기화 빈번</u> 2007 년 1 월, 보험약가 산정체도가 파지티브 시스템 (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된 이후, 신약의 산정 약가는 선진 7 개국의 평균치인 35%로, 모든 외국과 비교해 매우 낮게 산정되어 있다.</p> <p>또, 같은 시기부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하 HIRA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NHIC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과의 이중 약가 협상 결과 협상기간이 공연히 장기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도 많아, 오랜 시간과 막대한 개발투자를 들여 보건당국에게 유용성, 안정성을 인정받아 허가된 신약이 일상적인 보험 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보험 상환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p> <p>2009 년 1 월부터 2009 년 4 월까지 59 개 품목의 신약이 허가되었으나, 이들이 승인되기까지의 약가 협상에 평균 약 1 년반이나 소요되고 있다(최장 3 년인 경우도 있음). 이 가운데, 협상이 성립되어</p>

보험 상환되었던 품목은 29 품목 뿐이며, 협상 결렬 의사표명이 있던 것이 9 품목, 사실상 결렬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도 7 품목에 이르고 있다.

저약가 산정을 목적으로 한 협상의 장기화로 신약 개발 투자의 회수 기간인 특허기간은 사실상 단축되고, 저약가 산정에 따라 장기 협상으로 피폐한 제약 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더욱 압박을 받아 수익기대기간 단축과 저가격으로 인하여 신약 개발 투자 비용 회수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 한국 내에서 대대적인 개발 투자를 실시하여 판매 허가를 취득한 신약이라고 하지만 사업 전개에 의한 투자 회수의 전망이 서 있지 않아 제품 판매를 연기하는 품목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NHC 가 개별 제약 기업과 약가 협상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1)항’이라고 하나 ^(참고*1) 근거로써 너무나도 빈약하며 규제 당국에 준하는 기관과 개별 민간 기업 사이에서는 협상당사자로서의 역학관계에 현저히 불균형이 있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2)약가 산정 기준의 합리성

많은 규정을 가진 약가 산정 기준에는 각 기준을 설정한 합리적 근거가 공개됨과 동시에 각 기준간의 합리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신약 약가 산정 시에는 기업이 제출하는 경제성 평가자료(작성비용에 1 억원 정도 필요)를 HIRA 가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종동효품인 제네릭을 포함한 가중평균치가 상한 가격이 된다’는,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신약의 약가 산정에 특허 만료 후인 제네릭 가격이 참조되는, 전혀 이질적인 생각에 근거한 ‘단서조항’이 적용된다.

또,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인종적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내 제품 개발로 인해 한국인에 있어서의 유효성 /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는 신약에 대해서도 ‘해당 약제가 해외 3 개국 이하의 국가에서밖에 보험 등재되지 않은 경우, 협상 참조 가격(HIRA 권장가격)의 80%를 상한선으로 적용한다’라는 근거가 희박한 기준이 존재하여 이 기준이 적용된다. HIRA 가 보험 상환 대상으로써 승인한 신약의 가격은 NHC 에 보내져 더욱 인하되며 협상이 종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당 규정은 한국 보건 당국의 신약 심사 능력이 미숙했던 시절, 선진국 3 개국 이상에서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당국이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되었던 제도의 흔적이라고 추측되나, 심사 수준이 현격히 향상된 현재에는 해당 규정의 근거는 매우 애매한 것이다.

본래 참조해야 할 경제성 평가 자료나 외국 약가라는 기준 이외에, 완전히 목적이나 개념이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약가 협상은 현격히 제한을 받고 있다. HIRA 에서 NHC 로 상대가 바뀌면서

	<p>실시되는 약가 협상에서는 기존약에 비해 신약의 효과와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KFDA 가 허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산정 상 그 우수성은 일절 인정되지 않고 경제성만을 심의하고 있다. 당국이 일방적으로 인하를 재촉하여 기업측은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경영자원을 사용하면서 한도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실태이다.</p> <p>이들 기준이나 협상의 실태는 한국에 대한 신약 도입을 공연히 지체시켜서 환자의 치료 향상 기회를 빼앗는 악법·악습이다.</p> <p>KFDA 가 우수성을 인정한 신약의 가치를 제네릭을 포함한 가중평균치를 상한 가격으로 함으로써 HIRA 가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 NHC 가 독자적으로 기준을 남발하여 HIRA 의 판단을 더욱 훼손시키고 있다. 규제당국간에서 약가 정책에 관한 합리적 일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 의료 복지 향상이라는 사명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 행정당국에서 신약의 개발 수준 향상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높은 행정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거기서 확인된 신약을 국민의료의 장에 제공하고 의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국면에서는 재정적인 면에만 사로잡혀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p> <p><u>(3)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약가 산정 기준</u></p> <p>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인 ‘별지 2’에 관하여 생물학적 제제의 제조소 변경 시, 별도 품목에서 허가를 취득하게 되나,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약가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각 기업의 개발 계획에 불확정 요소로써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기준의 부재는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사업 전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p>
개선요망	<p>(1) <u>HIRA 와 NHIC 의 업무 분담을 명확화하고, 약가 산정 협상의 중복적 제약 기업에 대한 부담 개선을 요망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약가 협상 창구를 이전과 같이 HIRA 로 일원화해 주기 바란다. ➢ HIRA 와의 신약의 약가 취득 과정에서 의료 경제 평가(HTA; Health Technology Assessment)에 의해 산정 약가의 합리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가격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 <p>(2) <u>합리성이 결여된 아래 규정을 철폐해 주기 바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동효품인 제네릭을 포함한 가중평균치가 상한 가격’ ➢ ‘3 개국 이하 보험 약가 등재가 3 개국 이하인 경우, 참조 가격 최저가의 80%에서 약가를 산정한다’(아시아개발 의약품에 한하여) <p>(3) <u>생물학적 제제에 대하여 제조소 변경시 약가 산정 기준을 신설해 주기 바란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이선서가 같은 의약품인 경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인 ‘별지2’의 제1조6호에서 ‘규격 또는 용기가 다르지 않는 경우에도 자사 제품과 동일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p>하고, 제 1 조 9 항에서 ‘(1)에서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성분, 동일 함량인 자사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자사 제품과 동일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추가한다.</p>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법 제 42 조(의료급여비용 산정 등) 1)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의 계약을 통해 결정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 ‘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공시) ▶ ‘약가 협상 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시)

<p>건 명</p>	<p>28.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개선 【신규】</p>
<p>현황/문제점</p>	<p><현황></p> <p>현재, 한국의 시판후 의약품의 약가에 관해서는 여러 외국 약가를 참조한 약가 재평가에 의한 인하, 기등재 의약품 약효군별 품목 정비에 의한 인하, 입찰병원을 제외한 실거래가격에 의한 가격인하, 리베이트 적발 인하, 사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연동 인하, 특허 만료 의약품 인하, 등 다양한 약가 인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p> <p>여러 외국 약가를 참조한 약가재평가제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도입된 제도이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의해 도입된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논리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이미 3 년 주기 사이클이 순환되어 A7 가격수준의 약가 관리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를 상실해 단순한 환율변동만이 반영된 불합리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p> <p>게다가 2010 년 10 월에는 시장형 실거래가격에 따른 약가 인하를 포함한 ‘의약품 저가구매 유도 제도’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p> <p>본 제도는 민간끼리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한편, 정부에 의한 리베이트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래 약가 제도의 목적인 경제합리성 반영을 정부 스스로 뒤집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는 고약가 의약품일수록 인센티브가 커지므로 결과적으로 고약가 의약품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보험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p> <p><문제점></p> <p>의료의 관점에서 본래는 병의 증상별로 의사가 선택해야 할 의약품이 인센티브의 크기에 따라 선택되는 등, 신약 개발이나 정보 제공에 관한 의약품의 경제 가치가 무시되고, 이익에 의한 가격</p>

	<p>경쟁만이 주목되고 있는 왜곡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국민의 건강 수준은 악화될 염려가 있다.</p> <p>위에서 기술한 여러 가지 약가관리제도가 때로 중복 적용되면서 약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신약의 개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며, 한국에서의 사업전개 의욕을 감퇴시킴과 동시에 중복되는 약가 인하 적용과 제도의 변질은 제약 기업의 사업 환경 악화를 가져오며, 더 좋은 의약품을 계속 제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p>
<p>개선요망</p>	<p>기존의 관리제도 간의 다중 적용에 의한 과도한 약가 인하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기 바란다.</p> <p>(1) <u>신약가 취득 후, 특허기간 중에는 다른 제도에 의한 약가 인하를 유예한다.</u></p> <p>(2) <u>유예가 불가능한 경우는 약가관리제도의 중복 적용에 의한 연간 약가 인하율에 5%등의 상한을 설정한다.</u></p> <p>(3) <u>특허만료 의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중복 제외 규정을 전체 약가관리제도에 확대 적용하고, 연간 약가인하율은 각 제도의 최대인하율을 상한으로 한다.</u></p> <p>(4) <u>해외 약가 참조에 의한 약가 재평가제도는 폐지한다.</u></p> <p>(5) <u>정책으로써의 모순점을 다수 갖고 있는 ‘의약품 저가 구매 유도 제도’시행은 철폐해 주기 바란다.</u></p>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보건복지부</p> <p><관련법령></p> <p>➢ 국민건강보험법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조정’(보건복지부공시)</p>

건 명	29. 중소기업을 배려한 정부조달제도의 재시행 【계속】
현황/문제점	한국에서는 정부 예산 감축을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사무기기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입찰 경쟁을 실시하여 최저 가격을 제시한 회사로부터 필요한 수량을 모두 공급받고 있다.
개선요망	자금력이 풍부하고 중소 사무기기회사보다 큰 폭의 가격인하를 제시할 수 있는 일부 대기업이 공급 물량을 낙찰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따라서 <u>이와 같은 경쟁 입찰을 폐지하고 과거와 같이 중소기업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제도를 실시해 주기 바란다.</u>
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	<p><관련기관> 조달청 <관련법령>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업무처리 규정 (조달청 훈령 제 1437 호 2008 년 12 월 5 일 시행)</p> <p>※다수공급자의 물품 계약 업무의 처리 규정 제 29 조(가격 등의 제안서 제출) 계약 담당 과장은 계약 물품에 대하여 수요 기관에 1 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1 억 원 이상인 경우, 3 인 이상의 계약 상대를 대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해야만 한다.</p>
비 고	일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써 관공서 수요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게 할당하고 있으며, 각 부처별로 목표치를 설정, 조달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6. 생활환경개선분야

<p>건 명</p>	<p>30. 교통문제에 대한 개선 【신규】</p> <p>(1) 정비불량차량의 단속 강화 (2) 오토바이의 보도 주행</p>
<p>현황/문제점</p>	<p>(1) 정비불량 (전조등, 후미등 및 방향지시등의 고장)차량이 많이 주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장에 의한 차도에서의 돌연 정지로 교통 정체, 차량 접촉 사고 등이 다발하고 있다.</p> <p>(2) 오토바이가 보도를 주행하는 모습을 자주 본다. 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많다.</p>
<p>개선요망</p>	<p>(1) <u>차량검사제도 주지, 불량 정비 차량의 단속 강화를 바란다.</u></p> <p>(2) <u>보행자의 안전 확보 관점에서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벌칙규정을 강화(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인상/벌칙기준 강화 등)를 해 주기 바란다.</u></p>
<p>관련기관 / 관련법령 등</p>	<p><관련기관> 경찰청 <관련법령> 도로교통법</p>